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	비율산정 대상구분	오류내역
GSMA	A01018	신한BNPP퇴직연금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 간접형]	신한BNPP퇴직연금영품펀드셀렉션40증권투자신탁[재 권혼합-재간접형]	K55210B87405	KR5210AV2494	20161124	산정대상	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사항 없음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이행계획 공시] : 해당사항 없음

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이행실적 공시] : 해당사항 없음

(5)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비율 공시]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공모추가형 펀드수	소규모 펀드수	부실자산 펀드수	증투법_개인연금 펀드수	소규모펀드 비율	제출기준일	오류내역
GSMC	A01018	112	21	14	0	7.14	20161130	



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이행계획 공시, 이행실적 공시, 소규모펀드 비율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